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1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
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9조제3호의2나목 중 “평생학습관(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)”을 “평생학습관(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), 버스공영차고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19조(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·설치기준)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·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제119조(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·설치기준) -----		
1. ~ 3. (생략)		-----		
3의2.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		-----.		
가. (생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, 대학생용 공공기숙사, 문화시설, 사회복지시설, 체육시설, <u>평생학습관(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)</u>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(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		3의2. -----		

		가. (현행과 같음)		
		나. -----		

		----- <u>평생학습관(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), 버스공영차고지</u> -----		

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 주택을 포함한다) 다. (생략) 4.·5. (생략)	----- ----- 다. (현행과 같음) 4.·5. (현행과 같음)
---	--